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37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57분의 323.96 지분에 관하여 2018.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1,957분의 323.9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3. 11. 접수 제1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위 법원 2012가소2177457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9. 11.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C은 원고에게 24,706,626원 및 그 중 14,435,247원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2.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사촌 형인 C은 2005.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23.96/1,957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5. 8.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C과 사이에 2018. 4. 6.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3. 11. 접수 제144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지분 외에 구미시 F 도로 26㎡ 및 G 도로 19㎡에 관한 각 323.96/1,957의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13,293,451원(= 42,000원 × 1,912㎡ × 공유지분 323.96/1,957)이었다. 또한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무의 2018. 4. 6.까지의 원리금 합계 40,937,380원[= 24,706,626원 + 원금 14,435,2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16,230,754원{= 14,435,247원 × (5 + 227/365) × 20%}]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총 47,172,333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H원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3. 11. 접수 제1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일자는 2010. 5. 12.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0. 5. 12.을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본안 전 항변), 본안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2010. 5. 12. 이후인 2011. 12. 2.에 발생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 2010. 5. 12.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6. 17. 및 2010. 5. 12.에 각 9,000,000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0. 5. 12.에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그 체결일자가 '2018. 4. 6.'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위 법원 2020가단141275호)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일자가 '2010. 5. 12.'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0. 8. 9.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12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21. 2. 10.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만일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르지 않다면,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겠으나,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관련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이 이 사건 지분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구미시 F 도로 26㎡ 및 G 도로 19㎡에 관한 각 323.96/1,957의 공유지분이 있었으나, 위 구미시 F 도로 26㎡ 등의 경우 그 지목이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전체 면적 역시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 액수는 총 88,109,713원(= 47,172,333원 + 40,937,380원)으로서 그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인 13,293,451원을 훨씬 초과한다.

2)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제2의 나.항 기재 ‘피고 주장의 요지’ 중 본안 판단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들 역시 모두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날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자인 ‘2018. 4. 6.’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0. 5. 12.’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들인데,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일자가 ‘2010. 5. 12.’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의 위 주장 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주장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5867호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4.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5867호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결과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이후 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피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1275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의 판결문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도 피고는 C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C의 변제자력이 악화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